

전문인명구조사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

(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23조제6항 관련)

구분	시설	세부규격
1차 평가	강의실	- 30석 이상의 책상과 의자를 갖추고, 빔프로젝터와 PC, 음향시설을 구비한 시설로써 2개실 이상
2차 평가	자동차사고구조	-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이상으로 그 공간이 33m ² 이상이어야 하며, 구조물의 벽면 및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의 강도를 지닌 시설 - 승용차량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 1대
	밀폐공간사고구조	- 5m깊이 이상의 맨홀시설로써 내부는 10m ² 이상이며, 5m이상의 수평궤도가 설치된 시설
	로프산악구조	- 인명구조사 2급 로프구조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- 수평수직구조가 가능한 폭 20m이상, 높이 8m이상의 시설
	수상인명구조	- 인명구조사 2급 수상인명구조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
	수중인명구조	인명구조사 2급 수중인명구조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
	도시탐색구조용	- 대지 1000m ² 이상 - 구조물안정화(벽체, 경사면, 수평, 수직지주)훈련이 가능한 내·외부시설 - 콘크리트 천공·파괴시설(수평/수직) 1개 - 콘크리트(가로1.4m×세로1.4m×높이0.1m이상) 10개 - 콘크리트(가로0.5m×세로0.5m×높이0.5m이상) 1개
	화생방구조용	- 대지 1000m ² 이상으로 외부와 구획된 안전한 공간 - 소방 설비 관련교육과 유해물질 누출 차단 훈련이 가능한 시설
비고	수상인명구조 및 수중인명구조의 시설은 다른 장소에서 협의 또는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있다.	